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경험 및 생태계 진입을 목적으로 제주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6. 30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I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및 청년의 사회연대경제 현장 진입 견인
- (사업 기간) 2026년 5월~12월
- (사업 대상) 제주 도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모집 규모) 상시 모집
 - ※ 일경험 참여청년 총 40명 충족시 모집 마감 (기존 선발청년 28명)
- (지원 내용)
 - 일경험 청년인턴 기업당 최대 4명 배정 (근무기간은 근로일로부터~11월까지)
 - ※ 청년인턴은 만 19~39세 미만의 미취업자이며, 제주도에 주소가 등록돼야 함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인건비(제주 생활임금 시급 12,110원, 월 최대 2,530,990원), 4대 보험료(월 최대 290,300원)
 - ※ 인건비는 기업이 청년에게 먼저 지급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운영기관(센터)에서 확인한 후 기업에게 해당 인건비를 지급함 (관련근거: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기업 운영비(청년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멘토수당(청년 1인당 월 최대 15만원)
 - ※ 청년인턴 추가 인건비를 지급할 시 추가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는 기업이 부담함

II 주요 내용

□ 공모 개요

○ (공모 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사회적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마을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분야 지원사업 수행 중간지원조직(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참여요건) 참여기업은 신청일 기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며, 최근 6개월 내 실제 경영활동이 확인되며,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실적이 확인되어야 함*

❖ 실질적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

- ▶ 사업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협약서, 공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지원 내용)

- 일경험 청년인턴 기업당 최대 4명 배정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11월)
- 청년인턴 인건비(월 최대 2,530,990원), 4대 보험료(월 최대 290,300원)
 -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제주도 생활임금 시급 12,110원 기준)
 - ※ 인건비는 기업이 청년에게 먼저 지급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운영기관(센터)에서 확인한 후 기업에게 해당 인건비를 지급함 (관련근거: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기업 운영비(청년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멘토수당(청년 1인당 월 최대 15만원)

□ 공모 신청

○ (신청 기간) 2026년 6월 30일부터 상시 모집

※ 일경험 참여청년 총 40명 충족시 모집 마감 (기존 선발청년 28명)

○ (신청 방법)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①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h.org) 접속
- ② 해당 사업 공고 게시물 접속 후 신청하기 접속하여 제출

○ (참여 유형) 취업형 인턴, 일자리창조형 인턴

※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신규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 참여청년을 팀(2~4명)단위로 기업과 매칭
(예: 고용노동부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연계 직무개발 추진)

○ (우선 배정) 국가 사업 또는 제주 핵심사업 연계 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유형	우선배정 대상
에너지	•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
통합돌봄	•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기타 국책사업) 제주정책사업	• 제주 국책사업 분야 (고용노동부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사업 및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① 로컬푸드, ②돌봄 ③관광을 주 비즈니스로 운영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참여기업 신청서	⑨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⑩ 전년도 기준 매출액 증빙자료
③ 참여기업 확인서	※ 매출액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④ 참여기업 서약서	※ 비영리법인·단체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근년도 결산서,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세출 내역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음
⑤ 회사소개서	⑪ 근무환경 사진 자료(2장 내외) ※회사 내외관, 근무장소 등
⑥ 사회연대경제 조직 증빙서류	⑫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
⑦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사업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협약서, 공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⑧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 (문의)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 070-4236-3385~3386

□ **선발 방법**

- (심사 방법) 참여기업 적격 여부 내부검토
- (선정 공고) 선정기업 개별통보
- (심사기준) ①참여기업 규모(25점), ②직무설계 적정성(25점), ③지원 및 관리체계(25점), ④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25점), 가점 10점
- (부적합 예시)

❖ 일경험 프로그램 부적합 예시

- ▶ 참여청년 수행직무 또는 직무개발 아이템이 불명확한 경우
-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경우
- ▶ 과업이 단순·반복적이며 직무역량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
- ▶ 직무교육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수시 지시 중심 업무 수행
- ▶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 등

□ 청년 면접

- (청년접수) 청년은 선호하는 기업을 최대 3개사까지 명시하여 신청
- (면접대상 알림) 청년이 희망한 기업에게 청년 정보를 공유
- (면접방법) 면접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 (면접) 기업과 청년이 면접일 조율 후 진행하여 기업이 선발여부 결정
 - ※ 면접심사는 참여기업 대표 필수참석(부득이한 경우로 불참시 임직원 대리참석 가능)
 - ※ 청년 면접 채점표를 운영기관(센터)에 필수 제출해야 함
- (합격통보) 센터는 참여청년에게 합격여부 및 합격기업을 통보
- (근로시작) 이후 참여기업과 청년은 근로시작일을 조율하여 근로를 시작함

□ 참여기업 역할 및 준수사항

- 참여청년 면접 및 선발
- 참여청년 대상 직무 기반 과업 부여, 코칭 및 피드백 등 참여청년 지도·관리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주 1회 이상, 월 1회 센터에 멘토 면담일지 제출)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공간, 장비 등)
- 참여청년 출결현황 및 운영실적 보고(월별)
- 근로시간은 주 5일,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를 준수하며,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로 함
- 연장근로시간은 참여청년의 합의가 있을시 주 12시간 이내로 함
 -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기업의 긴급한 필요가 있고 참여청년과 합의한 경우 실시 가능
 - ※ 휴일·연장·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참여청년과 합의를 통해 주말운영 및 시간조정(08:00~19:00 범위) 가능
 - ※ 기업과 청년의 합의로 위 운영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급여는 기업이 부담함

III 기타 유의사항

□ 참여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청년의 직무를 기업 업종·직무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함
- 일자리창조형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 직무 아이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신규 직무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준수사항

- 참여청년이 수행하는 직무는 사전에 확정된 바에 따라야 하며, 참여기업에 의해 수시로 변경 불가
 - ※ 참여기업은 청년에게 일경험과 무관한 업무(정치, 종교, 사적 활동 등)를 수행시킬 수 없음
- 참여청년을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인력공급·도급 등의 방식으로 타 기관의 상시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없음
- 일경험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함
 - ※ 전담인력이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멘토 겸직 가능
- 전담인력은 참여기업을 대표하여 참여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기관에 대한 보고 등 일경험 운영 전반에 협조하여야 함
-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참여청년의 안전을 확보하고, 참여청년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보건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구제절차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절차를 사전에 마련함
 - ※ 참여기업은 성희롱 피해자 및 피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안 됨
- 참여청년이 일경험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기된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참여청년이 일경험 기간 동안 사업장 내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향후 채용 등을 조건으로 참여청년에게 불이익한 처우 강요 불가
- 참여청년 상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불가

□ 참여제한

○ (참여제한) 참여기업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참여 불가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 가능

※ (확인방법) 사회적기업포털 > 현황·성과 > 사회적기업 조회 > 사회적기업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 (참여가능)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참여불가)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참여불가)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예시 >

▶ (참여가능)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

※ 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 (참여불가) 국비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다만, 취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 (참여불가) 해당 조직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예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경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채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걱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함

□ 참여중단

○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중단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 사업 종료 이후라도 인력 대체 사실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 반환·환수 등 페널티 적용

③ 참여기업의 폐업,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괴롭힘, 성희롱, 산업재해 등)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④ 운영기관인 센터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불응 등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이 경우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참여중단 여부를 결정

□ 신청 및 심사관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선정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IV 불임 및 서식

- 불임 1. 참여기업 선정기준
- 서식 1-1. 참여기업 신청서
- 서식 1-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서식 1-3. 참여기업 확인서
- 서식 1-4. 참여기업 서약서
- 서식 2. 참여기업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3. 참여기업 면접심사표 및 선발 의견서

붙임 1 참여기업 선정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참여기업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기준 매출액(15점) <table border="1"> <tr> <td>5억원 이상</td> <td>2억원 이상 ~5억원 미만</td> <td>1억원 이상 ~2억원 미만</td> <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5천만원 미만</td> </tr> <tr> <td>15</td> <td>12</td> <td>9</td> <td>6</td> <td>3</td> </tr> </table> <p>※ 매출액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 ※ 비영리법인·단체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근년도 결산서,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세출 내역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고용인원(10점)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 <p>- 마을기업, 협동조합</p> <table border="1"> <tr> <td>10인 이상</td> <td>7인 이상 ~10인 미만</td> <td>5인 이상 ~7인 미만</td> <td>3인 이상 ~5인 미만</td> <td>1인 이상 ~3인 미만</td> </tr> <tr>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able> <p>- 비영리법인·단체</p> <table border="1"> <tr> <td>7인 이상 ~10인 미만</td> <td>5인 이상 ~7인 미만</td> <td>3인 이상 ~5인 미만</td> <td>1인 이상 ~3인 미만</td> </tr> <tr> <td>10</td> <td>7</td> <td>5</td> <td>3</td> </tr> </table>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5	12	9	6	3	10인 이상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8	6	4	2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7	5	3	25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5	12	9	6	3																									
	10인 이상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8	6	4	2																										
7인 이상 ~10인 미만	5인 이상 ~7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1인 이상 ~3인 미만																											
10	7	5	3																											
직무설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 참여청년이 수행하기 적절한 나이도인가? • 단순·반복 업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가? • (일자리창조형) 기존 직무와의 차별성, 실행 가능성 	25																												
지원 및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경험 전담인력 및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가? • 선임기준에 맞는 멘토가 지정되었는가? • 청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가? •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인프라(공간·장비 등)가 확보되어 있는가? 	25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수행이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는가? • 향후 취업 또는 진로 선택과 연계 가능한가?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지역 수요 대응과 연계되는가? 	25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5점) •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5점) 	10																												

서식 1-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1. 운영개요

기업명		총모집인원	명	
소재지				
일경험 유형	[] 취업형 [] 일자리창조형	월 급여	원 (시급 원)	
근무기간	'26. . . ~ . . .	근무형태	1주 일, 1일 시간	
일근무시간	00:00 ~ 00:00 (시간)	휴게시간	00:00 ~ 00:00 (시간)	
직무분야	직무 세부내용 ¹⁾	모집인원	근무장소	주말근무 여부
	○ ○	명		<input type="checkbox"/>
	○ ○	명		<input type="checkbox"/>
	○ ○	명		<input type="checkbox"/>

1) 참여청년이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작성하되, 총 모집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참여청년 간 역할분담이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

※ (예시) 직무분야 : ①홍보·마케팅·영상·디자인, ②시 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③상담·교육·복지서비스, ④문화예술공연 전시 기획·지원, ⑤에너지·안전·기술진단, ⑥사무행정·회계·경영지원

2. 멘토 구성

부서명	직책	성명	배정인원	경력기간	비고
			명	년	
			명	년	
			명	년	
			명	년	

3. 세부 운영계획

일 정		근무일수	주요 업무	비 고
1개월	1주차	5일		
	2주차	5일		
	3주차	5일		
	4주차	5일		
2개월	5주차	5일		
	6주차	5일		
	7주차	5일		
	8주차	5일		
3개월	9주차	5일		
	10주차	5일		
	11주차	5일		
	12주차	5일		
4개월	13주차	5일		
	14주차	5일		
	15주차	5일		
	16주차	5일		
5개월	17주차	5일		
	18주차	5일		
	19주차	5일		
	20주차	5일		

4. 참여청년 관리계획(자체 교육, 출결관리 방법 등)

--

5. (일자리창조형인 경우 작성) 직무개발 아이템 계획서

구 분	내 용
배경 및 필요성	기획 배경 및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지역 문제 작성
직 무 명	
주 요 직 무	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
주 요 고 객	서비스 대상
직 무 차 별 성	기존 직무(직업)와 무엇이 다른지 추진배경과 연계하여 기술
사 회 연 대 경 제 분야와의 연계성	
기 대 효 과	

※ 직무개발 아이템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하여야 함

서식 1-3 참여기업 확인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확인서

참여 적격 여부 확인 (참여 신청일 기준)	
1-1.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1-2.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사업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인가요	[] 예 [] 아니오
1-3.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나요 ※인증사회적기업만 해당	[] 예 [] 아니오
2.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4.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7.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 해당하나요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 약정 해지,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유의 사항

- ①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귀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중인 자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참여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실있는 일경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여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④ 위 제한사유는 일경험 기간 중에도 확인할 예정이며,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⑤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서식 1-4 참여기업 서약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서약서

사업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1. 본 기업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참여하며, 사업 취지를 이해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 시행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 기업은 참여청년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로 보호·관리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3. 본 기업은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하고, 권고사직 하는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4. 본 기업은 사업주(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참여청년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5. 본 기업은 사업주관 관리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화 또는 대면의 방식으로 확인요청 시 사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하며,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할 것을 서약한다.
6. 본 기업은 사업의 취지, 의무 및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 :

(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귀하

서식 2

참여기업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기업명,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기업 임직원 본인 확인, 참여 적격여부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참여자 관리,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 정보 안내	5년
※ 위의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 자	정보 제공목적	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기관, 기타 사업수행 관련 조직	1. 본 사업 참여 및 수행에 필요한 기업 및 개인정보 2. 본 사업 결과 및 성과 확인에 필요한 기업 및 개인정보	기업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연락처),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5년 또는 회원 탈퇴 시까지
※ 위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 대한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

항 목	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u>사업자등록번호</u> <u>고용보험사업장</u> <u>관리번호</u>	기업 확인, 참여 적격여부 확인, 참여기업 관리 등	5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3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
※ 위 고유식별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귀하

서식 3

참여청년 면접심사표 및 선발 의견서

참여청년 면접심사표 및 선발 의견서

심사일자: 일자 기재필요.

기업명	청년 성명					
구분	확인 사항	배점	점수 (√체크 표기)			
직무 적합성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필요한 기본 역량/지식을 갖추었는가?	20	5	10	15	20
조직 적합성	당사의 인재상, 기업 문화에 부합하며 잘 적응할 수 있는가?	20	5	10	15	20
태도 및 성실성	면접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자신감과 예의를 갖추었는가?	20	5	10	15	20
의사소통 능력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가?	20	5	10	15	20
발전 가능성	업무에 대한 열정과 배움에 대한 의지, 성장 잠재력이 있는가?	20	5	10	15	20
합계(100점)			합계점수 표기			
선발 의견	해당 청년을 선발하시겠습니까? ※예비선발은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이 최종 불발될 시 후순위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아니오		예비 선발	

참여청년 선발 담당자 (서명)